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를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32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2
1. 가스 분야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12
2. 가스 분야 위원회 해외 사례	13
3. 유사 법률안 비교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3.
3. 회 부 일 : 2025.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승인권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3호,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1호,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하도록 규정함¹⁾.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이하 “에너지요금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승

1) 개정안과 연계하여 ①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1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3호) 및 ②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요금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5호)이 함께 발의되어 있음(이상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③ <u>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 ⑧ (생략)	<u>인을 받아야 한다.</u>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u>에너지요금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요금 및 공급규정이</u>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할 때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20조제1항·제2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제20조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²⁾.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LNG 도입가격인 “원료비”와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인

2)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가스공사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에 한국가스공사가 산정한 가스공사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 산하의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³⁾와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⁴⁾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최종 승인⁵⁾하고,

가스 소매요금은 도매요금에 도시가스회사가 산정한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각 시·도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⁶⁾하는 구조임.

한편, 원료비와 관련하여 현행은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LNG 도입가격의 변동을 2개월마다 요금에 반영⁷⁾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3)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시행일: 2026.1.2.)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원료비는 2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며, 상업용, 발전용 원료비는 1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함.

「천연가스 공급규정」 별표 3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3. 운영방법

라.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

- 민수용 원료비의 조정주기는 2개월(홀수월)로 한다. 단, 제세공과금(관세 제외) 변동은 당월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시기는 조정월(n월)의 1일로 한다.
-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의 조정주기는 매월로 하며, 조정시기는 조정월(n월)의 1일로 한다.

시행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또는 환율 급등으로 LNG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동제를 유보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통보가 있으면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⁸⁾.

위와 같이 가스 요금 결정 과정이 심의·협의·승인 등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어, 가스 요금 결정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액화천연가스(LNG)가 전기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에너지 분야별로 가격이 독립적으로 결정되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원별 요금 결정 과정에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⁹⁾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8) 「천연가스 공급규정」 별표 3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5. 비상시 연동제 유보

- 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일정 사유 발생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각 항목별 사유는 아래와 같다.

(생략)

- 공사는 연동제 유보로 인해 원료비손실이 발생할 경우 향후 가스가격 안정 시 원료비 손실분을 가격에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9)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음.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하여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요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¹⁰⁾,

개정안은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도시가스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를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도시가스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승인 권한을 독임제 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하는 경우 다수 위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상 가스 요금 결정 과정에서의 안정성 및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 가스 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와 도매공급비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¹¹⁾, 실제로는 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 10)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3호,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1호,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에 반영되어 있음.
 - 11) 가스 요금 분야 위원회 구성·운영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업통상부 내부결재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시 에너지 요금을 전문적·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하는 기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는 공급규정에 대하여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에 대하여는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문언상 공급규정에 도시가스 요금이 포함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때, ‘도시가스 요금’에 대하여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에너지요금위원회의 도시가스 요금 관련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6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¹²⁾.

도시가스 요금의 승인 권한을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요금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아닌 에너지요금위원회에 도시가스 요금 관련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제3항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도시가스 요금의 승인 권한을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의 경감과 관련된 사무 또한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일관

12)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13)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된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제3항을 총리령 위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위임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가스 요금에 대한 사항의 결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미 정부, 학계 및 업계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¹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설치에 국내 가스산업의 구조¹⁵⁾,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¹⁶⁾, 에너지원별 산업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규정에는 가스 요금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등 가스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바, 요금 결정권(에너지요금위원회)과 수급 안정(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한 최종 책임이 분리되는 경우 비상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전라남도¹⁷⁾는 지역별로 가스의 공급여건 및 소매공급비용을 산정하는 총괄원가 구성 및 판매 환경이 상이하며, 소매공급비용은 도매요금

14)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및 도매공급비 검증위원회(참고자료 1 참조)

15) 에너지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해외국가의 경우 에너지 산업이 개방되어 자유화된 시장을 규율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국내 가스산업은 도·소매 시장이 독점화된 구조로 일부 자가소비용에 한하여 직도입을 허용하는 등 차이가 있다는 것임. 가스 분야 위원회의 해외 사례는 참고자료 2 참조

16) 에너지 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승인 권한을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7) 에너지정책과

과 다르게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보다 지역 여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에서 소매공급비용을 승인하기 보다 현행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도시가스협회는 에너지요금위원회의 획일적 규제로 인하여 가스 요금에 지역별 환경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하며, 소비자요금 대부분이 도매요금으로 구성되어¹⁸⁾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소매요금 심의가 소비자요금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도시가스 요금의 승인 권한을 각각 가스위원회 및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67호,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20호,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음¹⁹⁾.

문 의 처

02)6788-5468

18) '25년 12월 서울시 주택용을 기준으로 할 때, 소비자요금 22.3617원/MJ 중 도매 원료비는 79.2%(17.7120원/MJ), 도매 공급비용은 14.0%(3.1375원/MJ), 소매 공급비용은 6.8%(1.5122원/MJ)로, 도매요금(=도매 원료비+도매 공급비용)이 소비자요금의 약 93.2를 차지함.

19) 가스위원회, 전기가스열위원회 및 에너지요금위원회 관련 법률안 비교는 참고자료 3 참조

참고

1. 가스 요금 분야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구 분	위원회명 (설치)	운영현황
가스 요금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산업통상부)	(구성) 정부·학계·업계 등 민관 합동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운영) 도매공급비 조정(매년 5월)을 위해 매년 개최, 도매요금 제도 변경 등 필요시 개최 (기능)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사항, 천연가스 도매요금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도매공급비 검증위원회 (산업통상부)	(구성) 정부·학계·업계 등에서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 도매공급비 산정시 검증(5월 이전)을 위해 매년 개최 (기능) 도매공급비 산정 내용의 적정성 검증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

2. 가스 분야 위원회 해외 사례

국가	명칭(근거법)	위원회 구성	주요 기능
미국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FERC) (연방전력법 402조)	위원회(5명), 조직(약 1,500명) ↳ 대통령이 임명	사업허가(수력) 州間 도매/망요금
	州政府 공익사업위원회(PUC) (개별 州법에 근거)	- 위원회(3~7명) ↳ 주지사 또는 주의회가 임명 또는 선거로 선출 - 조직(州별로 상이, 100~1,500명)	사업허가 소매요금(일부) 표준요금(일부)
영국	가스전력시장규제청(OfGEM) 가스 전력시장위원회(GEMA) (가스법 1조/전기법 1조)	위원회(10명), 조직(약 971명) ↳ 위원장 및 위원: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임명	사업허가 표준요금 망요금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 (BNetzA) (에너지산업법)	- 위원회 ↳ 기관장 및 부기관장(2명) : 대통령 임명 - 조직(10개 실무부서, 11개 결정위원회)	사업허가 망요금
일본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EGC) (전기사업·가스사업법)	- 위원회(5명), 조직(5개부서, 약 130명) ↳ 경제산업성 장관 임명 - 경산성 산하기관(가격 규제 최종 권한은 경산성 보유)	규제요금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

3. 유사 법률안 비교

구분	김성원의원안 (의안번호 제2204367호)	김정호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820호)	김소희의원안 (의안번호 제2214232호)
위원회 명칭	가스위원회	전기가스열위원회	에너지요금위원회
위원회 성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소속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근거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법, 정부조직법	에너지법, 정부조직법
심의대상 사업	-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 -전기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도시가스사업 -전기사업 -집단에너지사업
가스 요금 승인 권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가스위원회로 이관 -시·도지사의 승인 권한 을 가스위원회로 이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전기가스열위 원회로 이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에너지요금위원회 로 이관 -시·도지사의 승인 권한을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위원 중 3명은 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
조직	사무기구를 둠.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를 둠.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를 둠.